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불출석의 죄 추가〉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77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전현회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10. 14.
3. 회 부 일: 2024. 10.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다룰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사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는 동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나, 동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통상 국회에서의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인의 불출석과 위증의 죄를 달리 취급하여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구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와 관련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형해화되는 경우가 많아 불출석의 죄 역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포함시

켜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 사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시켜, 청문회의 효용을 높이고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국회의 역할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3호사목 개정).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를 추가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 바. (생략)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의 죄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공수처법 제2조제3호¹⁾ 본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범죄”를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죄를 가목부터 아목까지 나열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음.

< 표 > 현행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유형		범죄행위	관련규정	
고위 공직자 범죄 (제2조 제3호)	공무원 직무 범죄 (가목)	「형법」 위반	직무유기(§ 122)	선거방해(§ 128)
			직권남용(§ 123)	수뢰 사전수뢰(§ 129)
			불법체포 불법감금 (§ 124)	제삼자뇌물제공(§ 130)
			폭행, 가혹행위(§ 125)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 뢰(§ 131)
			피의사실공표(§ 126)	알선수뢰(§ 132)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7)	뇌물공여등(§ 133)
	직무관련 문서죄 (나목)	직무와 관 련한 「형 법」 위반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41)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225), 허위공문서작성등(§ 227) 공전자기록위작·변작(§ 227의2),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9)	
	직무관련 재산죄 (나목)	직무와 관 련한 「형 법」 위반	횡령, 배임(§ 355)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356)
			배임수증재(§ 357)	미수범(§ 359)
	특별법상 금품수수죄 (다목·라목·마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죄(§ 3)	
			「변호사법」 상 청탁명목금품수수죄(§ 111)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45)	

-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2. (생략)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유형		범죄행위	관련규정
	기타 범죄 (바목·사목)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죄 (§ 21), 직권남용죄 (§ 2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증 등의 죄 (§ 14)	
	범죄수익은닉죄(아목)	각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및 §4 위반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가 규정한 불출석 등의 죄를 포함하려는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는 기존에 검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행하였던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실효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기존 사정기관의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는바, 공수처의 수사 범위 확대는 수사권 분산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어려움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① 개정안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는 범죄행위가 현행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와 유사성·관련성이 높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여부, ② 고위공직자의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게 작동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나, 같은 법 제13조²⁾의 국회모욕의 죄 및 동행명령거부죄 등은 제외하는바, ① 제13조의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같은 법 제12조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하다는 점, ② 통상 동행명령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에게 발부되므로 관련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논의에서는 제13조의 죄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에의 포함 여부 등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063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모욕의 죄) ①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②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